익산시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4 - 27호

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일반직 공개채용 공고

「지방공기업법」 및 「익산시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**익산시도시관리공단의 일반직(신규직) 직원**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.

2024년 3월 4일

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

1 채용분야 및 인원

가. 채용인원 : 총 3명 (신규직)

소 속	구분	직 렬	직 급	직 위	인 원	예 정 직 무	비	고
익산시도시관리공단	신규직	행정	7급	주임	3	일반행정사무		

※ 담당직무는 공단 내 인사이동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예정직무 외 업무 부여 가능함

2 응 시 자 격

가. 공통 응시자격

구 분	응 시 자 격
연 령	·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※ 정년(만 60세)에 해당되지 않는 자
성별·학력	· 제한 없음
병역사항	·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인 자
거주지	· 주민등록표(초본) 기준, 아래의 ①번 또는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<u>공고일 전일 현재</u>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② 공고일 전일 기준,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
	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※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군·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,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 기간을 월(月)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인정 ※ 거주기간 산정방법: 과거 거주사실 건별 월 단위 합산 + 건별 잔여일수 합산(30일을 1월로 계산) ※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
결격사유	·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[붙임]

가. 분야별 채용절차

구 분	1차	2	3차	
일반직(신규직)	서류 심사	인성검사 (면접시 참고용)	필기시험 (NCS직업기초능력검사)	면접 심사

나. 전형별 세부내용

구분	세 부 내 용
서류심사	 접수방법: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※ https://iksan.ncsplus.co.kr 합격기준: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전원 합격 ※ 불성실한 기재(동일문자 반복, 타기관명으로 기재 등)와 블라인드 채용기준 위반은 불합격 사유에 해당 채용공고에 의한 자격 및 경력요건 등에 대해 응시자가 직접 작성한 입사지원서 등 충족 여부를 심사 (응시자격 모두 충족시 합격) ※ 응시자가 작성하여 접수 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만으로 응시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하오니 입사지원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. ※ 서류 심사 이후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및 자격조건 등 응시자격에 대해 별도의 증빙절차를 거치며, 공단에서는 해당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 이때 제출된 증빙자료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최종합격 및 임용 이후라도 불합격 처리됩니다.
필기시험	시험구성: NCS직업기초능력평가(50문항, 50분) * NCS평가 항목 - 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직업윤리, 조직이해능력, 자원관리능력 합격기준: 자격이 증명되고 아래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자 가운데, <u>가산점을 더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</u> ※ 최저기준: 총점 40점 이상 득점 ※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 처리,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
인성검사	• 시험 구성 : 228문항(30분) ※ 인성신뢰도 60% 미만, 인성평균 60점 미만자 부적격(불합격) 처리 ※ 면접심사 시 참고용

• 면접방식: **블라인드 면접*** ※ 면접 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력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음 • 평정요소: 5개 항목 창의력· 의사발표의 예의·품행 직원으로서의 전문지식과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합계 정신자세 응용능력 및 성실성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100점 면접심사 • 평가방법 : 평정요소마다 "최우수(20점)","우수(17점)","양호(14점)","보통(11점)", "미흡(8점)"으로 평정 • 불합격기준 -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인 경우 -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'미흡'로 평정한 경우 -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평정 요소에 대하여 '미흡'로 평정한 경우

다. 전형별 일정

구 분	일 정	합격자 발표	비고
응시원서 접수	2024. 3. 8.(금) ~ 3. 14.(목)	2024. 3. 21(목)	▶ 인터넷 접수 ▶ 접수마감: 3.14.(목) 18:00
인성검사 NCS직업기초능력검사	2024. 3. 30.(토)	2024. 4. 3.(수)	▶ 신분증 지참하여 응시
면접심사	2024. 4. 9.(화)	2024. 4. 12.(금)	▶ 신분증 지참하여 응시

- ※ 접수마감시간('24.3.14.(목) 18시)이 임박한 경우 지원자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접수 마감시간은 연장하지 않음.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익산시도시관리공단에 서 일체 책임지지 않음
- ※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익산시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
- **※ 시험 장소·시간은 이전 전형 결과발표 시 안내**
- ※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유효기간 남아있는 여권만 인정) 미 지참시 각 전형 응시 절대 불가

라. 가산점 적용

구 분		세 부 분 류	가산비율
취업 지원 대상자 ¹⁾	행정7급 ²⁾	다음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	5% 또는 10% (개별법령에 따름)

- 1)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**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(☎1577-0606)을 통해 본인이 사전에 확인**
- 2)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적용하지 않음

- 가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하며,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채용사이트에 등록하여야 함
- O NCS직업기초능력평가시험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해 적용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다만,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, 그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러지 않음

마. 최종합격자 결정

구 분	결 정 방 법
신규직	필기시험 70% + 면접심사 30%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

[※] 채용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대상자,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, 면접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, 인성검사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

O 예비합격자 결정

- ▶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, 합격취소, 임용 결격사유,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, 예비합격자 지위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
- ▶최종합격자 외 차순위 성적자순(동점자 우선순위 적용)으로 직종별 합격예정인원의 1배수를 예비합격자로 결정
 - ※ 예비합격자 임용 시, 지원서에 기재한 휴대전화로 통보, 3회 연락 에도 연락불가 시 임용포기로 간주함

[※]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, 신체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음

4 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방법

가.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

O 대 상:최종합격자

O 신체검사: 채용신체검사서 제출(건강보험 검진결과로 대체가능)

※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분

O 결격사유 조회 : 관련기관 결격사유 등 확인

※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 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

나. 임용방법

O 임용후보자 등록을 거쳐,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, 졸업 등의 사유로 임용유예는 불가

※ 임용등록서류 등은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

○ 최종합격자의 임용취소·포기 등으로 추가 임용이 필요한 경우 예비 합격자 범위 내 순서에 따라 추가 합격 처리 후 임용후보자 등록

5 신분 및 근무조건

구 분	내 용		
임용신분	• 신규직 : 임용일로부터 6개월간 수습 임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정식 임용함		
보수	일반직 : 익산시도시관리공단 보수 규정에 의함 기본급 : 일반직 공무원 보수표 준용(당해호봉상당) 공무원 5급 6급 7급 8급 9급		
	공 단 3급 4급 5급 6급 7급 ※ 각종 수당은 익산시도시관리공단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		
근무조건	 정 년 : 지방공무원법에 준함(현기준 만60세) 근무시간 : 주 5일, 40시간 근무 ※ 부서 상황 등에 따라 시간외·휴일 근무 가능 근 무 지 :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지정 시설 		

6 응시자 제출서류

- O 서류제출 시 일반사항
 - ▶ 서류제출 시 온라인 접수(채용 홈페이지 증빙서류 첨부파일 등록)
 - ▶지원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모두 기재
 - ▶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며,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,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 - ※ 제출서류 모두 공고일 이후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
- O 원서 접수 시 서류
 - ▶ 입사지워서 1부
 - ▶ 자기소개서 1부
 - ▶개인정보 수입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
 - ▶ 주민등록초본(과거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) 1부(공통요건 확인용)
 - 주민등록 등본은 인정이 안되오니 반드시 공고일(2024.03.04.) 이후에 발행된 주민등록초본(과거주소이력과 병역사항 확인 가능한 초본)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 - ▶기타 서류
 -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7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

○ 채용시험 전 과정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채용절차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출신지역, 학력, 연령, 가족관계, 신체 조건 등의 정보를 평가에 활용하지 않으므로,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응시원서(자기소개서 포함)에 기재하거나 면접관에게 밝혀서는 안됨

- O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 등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 시하시기 바람
- O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나 기재착오, 각 기한 내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
- 응시원서 작성(입력)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함
- 최종합격자의 임용은 채용신체검사, 결격사유 조회 후 확정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의 발생 시 임용이 취소됨
- 인사 청탁, 제출 서류의 위·변조, 허위사실 기재,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즉시 해당 응시자의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하고,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됨
- O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함(채용서류는 시에서 요구하여 제출한 서류만 해당되며, 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제출 자료 등은 해당 되지 않음)
-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전형 결과 적격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공고문 외의 사항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 공단 규정, 공단 방침에 따름
-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익산시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응시자에게 개별통기됨
-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공단 채용 홈페이지(https://iksan.ncsplus.co.kr) 문의 게시판 또는 익산시도시관리공단 경영기획팀(☎063-839-2812)로 문의하시기 바람

붙임 채용 결격사유 관계법령 및 규정

[붙임] 채용 결격사유 관계법령 및 규정

- 「**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정관」제16조(임·직원의 결격사유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(이하 "임·직원"이라 한다)이 될 수 없다.
 - 1. 미성년자
 - 2.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3.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4.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5. 공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
 - 6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
■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- 1. 피성년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■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-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- 1. 공공기관
 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-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-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